

## 2016년 사방사업(산지사방)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

2016년 사방사업(산지사방) 시행을 위하여 산림(토지)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, 소유자 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13일

거 창 군



1. 사업명 : 2016년 사방사업(산지사방)
2.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 통지
  - 가. 편입대상지 내역 :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산110
  - 나. 사업내용 : 사방사업(산지사방)
    -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
  - 다. 사업기간 : 2016. 3월. ~ 2016. 6월.
3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16. 6. 13. ~ 2016. 6.27.)
4. 기타사항
  - 가.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합니다.
  - 나.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녹지과(☎055-940-34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16년 사방사업(산지사방) 필지 조서 1부. 끝.